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압 류 조 서				
채납자	소 속		계급·군번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압 류 일 시				
압 류 장 소	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 (별지의 압류 목록과 같습니다)				
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				
종 류	징수번호	금 액	납 부 기 한	비 고
1. 압류물건은 검찰서기가 점유하고 압류표로 봉인하는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, 채납자에게 보관시켰습니다. 2.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검찰서기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, 이를 처분하거나, 숨기거나,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. 3. 이 절차는 같은 날 00:00 에 종료하였습니다. 위 채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압류장소에서 의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「군사법원법」 제520조제5항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34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. 년 월 일 검찰부 성명 (서명 또는 인) 참여인 성 명: (서명 또는 인) 생년월일 : 주 소: 참여인 성 명: (서명 또는 인) 생년월일 : 주 소:				

(3쪽)

압류 목록

[illegible]